

퇴직시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요령

- 1 ~ 5: 연면, 건강보험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격취득(변동)일을 기재합니다.
 단, 공무원·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(기관) 취득(변동)일을 기재합니다.
- ⑥ : 가입자가 퇴직한 날을 기재합니다.
- ※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만 (퇴직사유)란에 "02"를 기재합니다.
- ※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'장제비 지급 청구서'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.
- ⑦ : 남부한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총보험료(사용자부담 제외)를 기재합니다.
- ⑧ : 퇴직근로)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(17)항목(과세대상급여의 계)과 (18)항목(국외근로소득)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 다만, 당해 기간 중 보수산정의 기초로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의 보수는 제외합니다.
- ⑨ : 퇴직 당해 연도의 보험료 납부대상 월에서 보수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을 제외한 월수를 기재합니다.
- ⑩ :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근무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⑪ : 퇴직 당해 연도 중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(사용자부담 제외) 총액을 기재합니다.
 <⑩보수월액 기준 월 보험료 X 퇴직 당해 연도 보험료 납부대상월수>
- ⑫ : 가입자가 퇴직당해 연도 기간 중 경감 받은 보험료(사용자 부담 제외)의 총액을 기재합니다.
- ⑬ :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⑭ :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남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기재하며, 가입자부담과 사용자 부담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.
 단, 공무원·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